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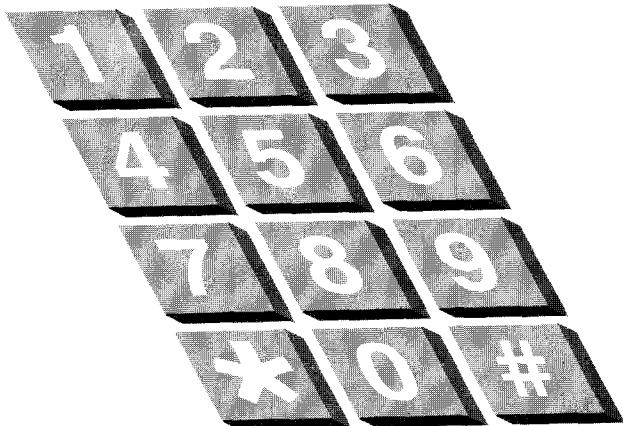


ITU 단일 Freephone 번호 (UIFN) 배정작업 착수



이 흥 린

한국통신 제네바사무소 파견



ITU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일 freephone 번호(UIFN)¹에 의한 신규 국제착신자요금부담 서비스(IFC)²의 실시를 위해 지난 1월 31일까지 번호 신청접수를 마치고 번호배정을 위한 신청번호 조정작업에 착수했다.

따라서 실제로 번호가 배정되는 4월말이나 5월초에는 UIFN에 의한 IFS서비스가 다수국가에서 개시될 전망이다. 한편, UIFN 배정과 관련한 조건 및 원칙은 ITU-T 권고 E.169 ('96. 2월 제정)에, IFS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신청절차 및 서비스 운용측면은 E.152 ('96. 7월 제정)에 기술되어 있으며, UIFN 번호 예약절차는 TSB Circular 241 ('96. 9.3)를 통해 공고된 바 있다. 이들 내용과 최근의 진행상황을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신규 국제 착신자요금부담 서비스(IFC)의 개념과 내용, UIFN 배정원칙, UIFN 예약접수 현황 및 배정계획, UIFN의 도입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신규 국제착신자 요금부담서비스 (IFS)의 개요

Freephone Service란 통화요금이 발신자측이 아닌 착신자측에 부담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서비스로, ITU측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대략 900만개의 번호(이중 미국이 약 90% 차지)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freephone서비스는 기업들에 의해 영업활동 및 고객서비스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통신에 의해 지난 90년부터 클로버서비스란 이름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오고 있다.

한편, 현재의 freephone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따라서 복수국가에 걸쳐 freephone서비스를 이용코자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개별 국가별로 해당지역 통신사업자

에게 별도의 번호를 신청, 부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안게 된다.³ 이에 반해, ITU-T 권고 E.152⁴ 및 E.169⁵를 바탕으로 번호등록 담당기관인 ITU로 부터의 초기 번호(UIFN) 배정이 완료되는 금년 4월 말이나 5월초 이후 서비스가 개시되게 될 IFS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즉, 국제적으로 (복수국가에 걸쳐) freephone서비스를 이용코자 하는 기업은 ITU로부터 전세계에 걸쳐 통용되는 단일번호를 배정받음으로써 전세계의 일반 전화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단일번호의 국제 freephone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⁶

2. UIFN 배정과 관련한 조건 및 원칙

ITU-T 권고 E.169는 국제 freephone서비스 가입자에게 UIFN을 배정함에 있어 UIFN의 기본원칙, 번호구조, 번호배정 원칙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바 이중 중요한 사항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UIFN의 기본원칙

UIFN format과 배정절차의 개발시 ITU에 의해 적용된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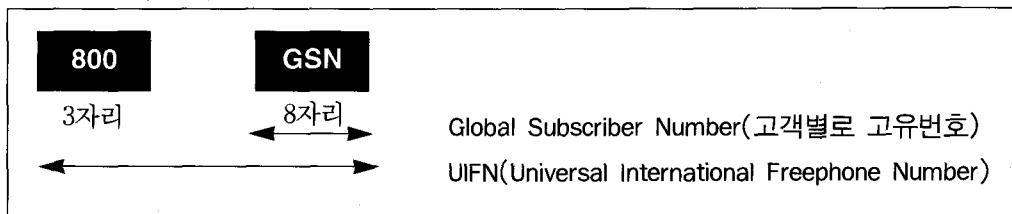
이는 또한 UIFN의 사용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 IFS 고객(기업)에게 최대한의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UIFN은 이동성(portability)이 부여되어야 한다. 즉, 가입한 통신사업자의 변경시에도 일단 부여받은 번호는 그대로 보유한다. 또한, UIFN의 번호(GSN)부분은 국가식별(발신 또는착신), 주관청 또는 서비스제공자 코드를 포함하지 않는다.
- UIFN의 구조는 고객에게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UIFN을 구성하기 위한 각 digit의 선택에 있어 자유를 부여하여야 한다.
- UIFN의 format은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적절하고 효율적인 routing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국가, IFS 서비스 제공자, IFS고객 사이에서 UIFN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공정하고 비편파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 UIFN의 번호구조

UIFN의 번호구조는 글로벌한 서비스 실시에 필요한 3자리의 CC(800)와 8자리의 GSN(Global Subscriber Number)로 구성됨으로써 총 11자리로 이루어진다. (그림 1 참조)

[그림 1] UIFN의 번호구조





한편, IFS발신자는 본인 소재지역의 국제통화 식별번호를 먼저 누른 후 UIFN 번호를ダイ얼링 해야 한다.⁷

3) 번호배정 원칙

UIFN 번호배정 원칙은 총 9가지로 이중 UIFN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UIFN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에 IFS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고객에게 배정된다
- UIFN은 번호를 배정받은 후 90일간의 유보기간 중 이를 구현키로 약속하는 고객에게만 배정된다. 신청자가 UIFN의 번호개통을 등록기관에 알려오기까지는 UIFN은 보류상태로 취급된다
- UIFN은 판매, 사용허가, 또는 거래될 수 없으며, 합병, 획득, 또는 합작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될 수 없다
- IFS 고객이나 서비스 제공자는 배정받은 UIFN에 대해 이용할 수 있을 뿐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3. UIFN 번호 예약절차 및 배정작업 진행현황

UIFN은 96년 6월 개최된 ITU 제51차 이사회에서 ITU-T(표준화국)를 UIFN 등록업무 담당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이후 ITU 표준화국이 번호 신청접수 및 배정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UIFN의 신청은 ITU 현장에 명시된 공인된 통신사업자(Recognized Operating Company)만이 UIFN의 사용

을 희망하는 고객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당초 번호 신청 접수 및 배정 일정계획은 다음과 같다(TSB Circular 241).

- '96. 12월 3일 : UIFN 번호신청접수를 개시
(접수기간: 60일)
- '97. 1월 31일 : 번호 신청접수 마감
- '97. 2월 1일 : 신청서 오류정정
- '97. 2월 4일 : 번호배정 시작
- '97. 2월 1일 이후: 선접수 선배정 원칙에 의해 접수순으로 번호배정

이에 따라 ITU-T에서는 번호등록 및 배정작업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96년중 완료하고 97년 2월 현재 신청접수 마감일인 1월 31일까지 접수된 번호신청 내역 (ITU-T측의 비공식 발표에 의하면 16,000 - 17,000건)에 대한 조정작업을 추진중에 있다.⁸ ITU-T 담당자에 의하면 이들 번호신청 접수 내역 중 약 2,000건이 상호간에 중복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번호배정은 이들 중복신청 및 신청서 오류정정이 완료되는 금년 4월 하순이나 5월초에 가서야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2월 1일 이후 접수된 번호신청에 대해서는 이들 1차 접수기간중 접수된 신청번호에 대한 배정이 이루어진 후인 5월 이후 선접수 선배정 원칙에 따라 접수된 순으로 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4. UIFN의 도입이 갖는 의미

UIFN을 이용한 신규 국제착신자 요금부담서비스(IFC)는 1차 UIFN 번호배정이 이루어지는 4월 말에서 5월초 부터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를 위해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 등의 주요 통신사업자들은

이미 신규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준비를 완료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호주, 캐나다, 홍콩 및 11개 EU 국가에서 UIFN을 이용한 IFS 서비스가 ITU의 번호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본, 싱가포르 등 일부 아시아지역 국가들도 금년 봄 내에 서비스 제공협약에 조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국경간 toll-free 통화에 대한 단일하고 범세계적인 통화방식이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UIFN을 이용한 IFS의 도입은 기업들이 범세계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소비자들에게도 개인비용의 부담없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정보획득 및 쇼핑을 가능케 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Internet서비스의 범세계적 확산 및 이용급증은 국제 freephone서비스의 이용확대를 가속화하여 향후 국제 freephone서비스는 엄청난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국제 freephone서비스의 등장은 최근까지 freephone서비스의 수용에 있어 비교적 속도가 느렸던 유럽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에 대한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UIFN의 도입은 각국의 통신사업자들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을 위한 타지역 사업자의 선택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서비스 비용의 저렴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현재 일부 지역의 국가독점 통신사업자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높은 국제통화요금을 낮추려 하는 압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UIFN의 도입을 세계 통신시장을 주도하는 선진 통신사업자들에 의해 국제통화 및 정산요금을 낮추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

으로 파악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5. UIFN 등록업무와 ITU

ITU는 90년대 이후 급변하는 전기통신환경하에서 ITU의 위상과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들어 ITU-2000 Working Group의 운영을 통한 ITU 재정기반의 강화방안 모색과 현행 회원제도 및 이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재검토, 조직구조 및 작업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등의 작업이나 세계전기통신 정책 포럼의 개최를 통해 국제간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이나 신규도입에 있어 중요 정책사안의 논의를 주도하고자 하는 노력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때 ITU가 이번에 UIFN 등록업무를 맡아 새로이 이에 대한 등록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ITU가 무선통신 Sector에서 무선 및 위성통신과 관련된 주파수 및 궤도의 등록과 관리업무를 담당해 온 것을 다른 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서, 변화하는 전기통신환경 하에서 ITU가 스스로 자신의 영역을 확립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 ITU가 개정기반 강화 방안으로 ITU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산출물에 대해 ‘자체 비용 충당(Cost recovery)’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UIFN등록업무는 이와 관련한 좋은 본보기로 평가되고 있다.⁹

주)

1. UIFN : Universal International Freephone Number의 약자. IFS 가입자에게 배정되는 국제 핵심자료금부담 서비스 번호로 전세계적으로 통용됨
2. International Freephone Service의 약자



3. 예로, 대한항공의 고객서비스 시스템을 보면 지역 고객서비스 센터가 대륙별로 존재하여 이를 서비스 센터에서 착신자 요금부담방식으로 고객문의를 처리하지만 여행자가 해외에서 이를 고객서비스 센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장소(국가)에 따라 각기 다른 local번호(즉, 대한항공이 서비스 이용가능 국가별로 해당 국가통신사업자에게 신청, 배정받은 freephone 번호)를 이용해야만 한다
4. '국제착신자 요금부담 서비스'
5. '국제착신자 요금부담 서비스용 UIFN을 위한 E.164 번호계획의 적용'
6. 물론 이 경우에서 실제 서비스가 이용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통신사업자가 이를 제공해야 한다
7.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한국통신을 이용 발신할 경우 001을 먼저 다이얼링 한 후 UIFN번호를 다이얼링하면 된다.
8. Freephone서비스 이용은 전세계적으로 볼때 북미지역이 매우 활성화된 반면, 유럽이나 아시아지역은 상대적으로 보급이 덜 활성화된 실정이다. 금번 접수결과에 대해 ITU측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신청접수된 번호의 상당 부분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사업자에 의해 신청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 UIFN 신청접수의 경우 번호 1개당 200CHF의 신청비용을 ITU에 지불하여야 한다. 